

2025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(대관) 운영지침

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 중심의 문화비축기지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축기지 내 ‘문화마당’ 및 ‘광장’의 장소사용 운영지침을 수립함

I 운영개요

☐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2조 및 시행령 제31조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26조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5조 및 시행령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15조 및 시행규칙 [별표3]
- 「공연법」 제11조 및 시행령
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 및
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및 [별표8]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 및 시행령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제29조

☐ 장소사용(대관) 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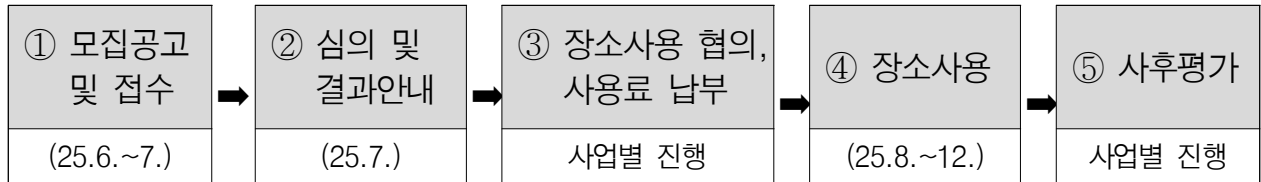
구분	장소		면적	행사 종류(예시)
1	T0	문화마당	7,620㎡	축제, 공연 등 야외행사
2		나무데크	987㎡	축제, 공연 등 야외행사
3	T1~T6 사이 보행로	광장*	6,289㎡	소규모 공연 등 야외행사

* 공원조성계획 상 기반시설인 광장

II 운영 절차 및 방법

□ 운영 절차 및 기간

○ 운영기간 : 2025. 6. ~ 12.



※ '26년 장소사용은 '25년 11월 공고 및 12월 결과 안내 예정

□ 모집

- 정기모집 : 2025년 하반기 장소사용 모집(연 1회)
- 수시모집 :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(신청 시)
- 신청방법 :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통해서 신청

□ 심의

○ 심의위원회 구성

- 위 원 장(1) : 도시활력담당관
- 내부위원(3) : [도시활력담당관] 도시활력계획팀장, 도시활력콘텐츠팀장
[문 화 예 술 과] 축제진흥팀장
- 외부위원(4인 이내) : 문화예술, 여가, 축제 관련 전문가 등

※ 전문가 풀(pool) 구성하여 심의 안건에 적합한 분야의 전문가로 운영

○ 심의위원회 운영

- 심의위원 5명 이상 구성 시(위원장 포함)
※ 예상인원 500명 미만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
- 정기 및 수시모집에 따른 심의 시
- 심의 결과는 원안 승인, 조건부 승인, 승인 불가로 구분

○ 사전 검토내용

- 사용일이 중복 신청된 경우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
-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
-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

○ 세부 심의내용

- 행사의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취지 적합성 및 공공성에 관한 사항
- 행사장 배치, 시설물 설치, 진행요원 배치, 인력계획 등
-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(영업배상책임) 보험 가입
- 행사 이용자 및 지역주민 안내에 관한 사항
- 소음 등 민원 대처에 관한 사항
- 주차장 및 공원 진출입구 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
- 행사장 원상복구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등에 관한 사항

□ 사후 평가

- 준수사항 이행 여부(소음 기준 충족 등)
- 민원 응대,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
- 사고발생 시 처리,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

Ⅲ 장소사용 승인 · 취소 기준

□ 장소사용 승인 기준

기본원칙

-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
- 문화, 예술, 공연 등 관련 행사 중 소음 기준 충족하는 행사
 - 소음 기준 : 주간 65dB이하, 야간(18:00~) 60dB이하

우선순위 적용 기준

-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 순위에 따라 승인하되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음
 - 서울시 주최 행사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
 -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는 행사
 - 문화비축기지 내 탱크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

□ 장소사용 승인 불가 기준

-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
-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- 공익, 공원 질서와 안전, 미관을 해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
 -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 발생이 많은 행사 등
- 사후 평가에 따라 향후 이용 제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
 - 소음 기준 미충족 등 준수사항을 미이행 행사 주최/주관 개인 또는 단체

□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

-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
-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
-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
- 시민 안전사고 · 감염병 예방 및 시설물 운영 · 관리상 필요한 경우
-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IV 사용료

□ 사용료 산정

-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[붙임2]의 범위 내에서 정함
- －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 시간은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 시간(청소 완료)까지 포함

□ 사용료 부과

- 장소사용료, 입장권 판매액10%는 서울시 세외수입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(부가가치세 별도)
-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
- 입장권 판매 행사는 판매수입의 10%를 사용료로 추가 납부

□ 사용료 환불

-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
-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 · 사용료는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. 다만, 재난 · 재해(황사·호우·태풍주의보 등)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

취 소 일	환불비율
사용예정일 7일전	전액 환불
사용예정일 6~3일전	10% 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2~1일전	30% 공제 후 환불
사용 당일	환불 불가

※ 도시공원 조례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2021.3.25. 개정

V 사용자의 의무사항

☐ 장소 원상복구 및 사용자 변상책임 의무

-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까지 원상복구해야 함
-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

☐ 양도 및 전대의 금지

-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

☐ 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

- 대상
 - －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, 지역축제, 야외공연
 - － 불, 폭죽,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
 - ※ 순간 최대 관람객 기준 :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
- 방법
 - － 장소사용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
 - ※ 재해대처계획서는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(문화예술과)로 별도 제출 (별첨 양식 참고)

☐ 보험가입

- 대 상 : 참가자, 관람객,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
- 가입금액 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
 - － 사망 : 1억5천만원 범위
 - － 부상 : 최대 3천만원 범위
 - － 후유장애 :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범위

☐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

- 현수막, 전단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 공개

□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

-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,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할 수 있음
-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
-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
-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 판매·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
-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·이동을 제한·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,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
-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

- 붙임 1.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세부 절차
- 2. 장소사용료 부과 기준
 - 3. 기타 사용료 부과 기준
 - 4.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. 끝.